

환경부 보도 설명자료	제공일	2019년 10월 14일
	소관부서	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
	담당자	한준욱 과장/심승우 사무관 (044-201-6805/6828)

제목 :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원활하게 이행되었음

[파이낸셜뉴스 2019.10.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환경부는 산업계 설명회(23회), TV·라디오·옥외광고 등의 홍보와 1대1 상담소 및 이동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원활하게 이행됨
- 향후, 산업계가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물질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하고, 제도 안내서 및 운영 가이드를 마련·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
- 2019.10.14일 파이낸셜 뉴스 <살생물 물질 기업 67% “신고 의무 몰랐다”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① '화학제품안전법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'(이하 '실태조사 용역사업') 결과 살균제,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을 다루는 기업 10곳 중 7곳은 신고의무를 몰랐던 것으로 나타남
- ② 산업계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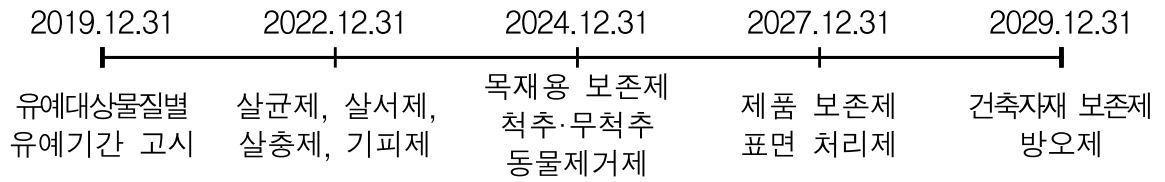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

①에 대하여

- 올해 6월말까지 진행된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'실태조사 용역사업' 보고서 상의 살생물물질 신고 의지가 있는 업체(354개사)보다 많은 7백여개 기업이 신고하여 원활하게 이행됨
- 이를 위해 그간 환경부는 신고제도 안내를 위해 설명회, 온·오프라인 광고 등 다양한 활동*을 추진하였음
 - * △권역별·제품유형별·환경청 관할유역별 설명회(23회), △TV·라디오, 일간신문, 온라인 포탈, 지하철역·버스터미널 등 옥외광고 △유관협회 홍보협조 요청
- 특히, 신고 안내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'실태조사 용역사업'을 실시하여 기존에 파악된 살생물물질 제조·수입업체와 가능성은 낮지만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*를 추가로 선정하여 1대1 안내, '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' 운영(5회)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하였음
 - * 「화관법」 유통량 조사 등 취급정보를 활용하여 살생물물질 용도 외 일반 화학물질 사용자까지 확대(9,180개 업체)하여 조사·안내 실시

②에 대하여

-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「화학제품안전법」을 입법예고(2016.12.28.)한 직후부터 법률제정(2018.3.20.), 하위법령 마련(2018.12.28.), 법률 시행(2019.1.1.)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간담회, 설명회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해 왔음
- 또한, 기업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살생물물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최장 10년간 물질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임



- 아울러, 산업계의 이행역량 제고를 위해 제도 안내서,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, 이행부담 완화를 위해 독성자료 생산, 유해성 정보 분석·제공 등 중소기업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